

의안번호	2218110
의 퇴 인	이강일의원
회 답 일	2026.6.29.
추계번호	26B189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의5 신설 (공유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차 장 실시간 이용현황 및 주차공간 공유정보 등을 통합 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공유주차정보시스 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의무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 자에 대하여 공유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 요한 주차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공간을 공유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21조의5 신설 (공유주차정보시스 템의 구축·운영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유주차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공유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주차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자에게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개정안은 공유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주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것인지, 전국 단위의 표준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참여 지방자치단체 수, 시스템 구축 방식, 기존 지방자치단체 주차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여부, 민간 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등 연계 대상 주차면수에 따라 사업 규모와 비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개정안은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자에게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기준 및 감면에 따른 지원기준 등이 대통령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해질 사항이므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국토교통부는 실제 사업 규모와 단가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정보화 전략계획(ISP)이 수립된 후에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비용을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임
 - 다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국 단위 유사사업인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ISP 용역 예산은 2020년 5억 6,300만원, 시스템 구축 예산은 2021년 26억 8,000만원으로 나타남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